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2012. 2

목 차

I . 사업개요	1
II . 제작지원 대상 및 내용	3
III . 제작지원 조건	5
IV . 신청절차 및 방법	12
V . 심사 및 평가	14
VI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16
VII . 총 제작비 집행 및 제작 지침	18
VIII . 중간보고	24
IX . 결과보고	25
X .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27

- | | |
|--------------------|-------------------------|
| 붙임 1. 사업제안서 양식 | 2. 착수신고서 양식 |
| 3. 방송통신발전기금 교부신청서 | 4. 제작비 비목별 산정기준 |
| 5. 중간보고서 양식 | 6. 결과보고서 양식 |
| 7. 정산보고서 양식 | 8. 회계감사보고서 양식 |
| 9. 정산내역서 양식 | 10. 제작비 변경 승인/신고 요청서 양식 |
| 11. 집행 잔액 송금내역서 양식 | |

I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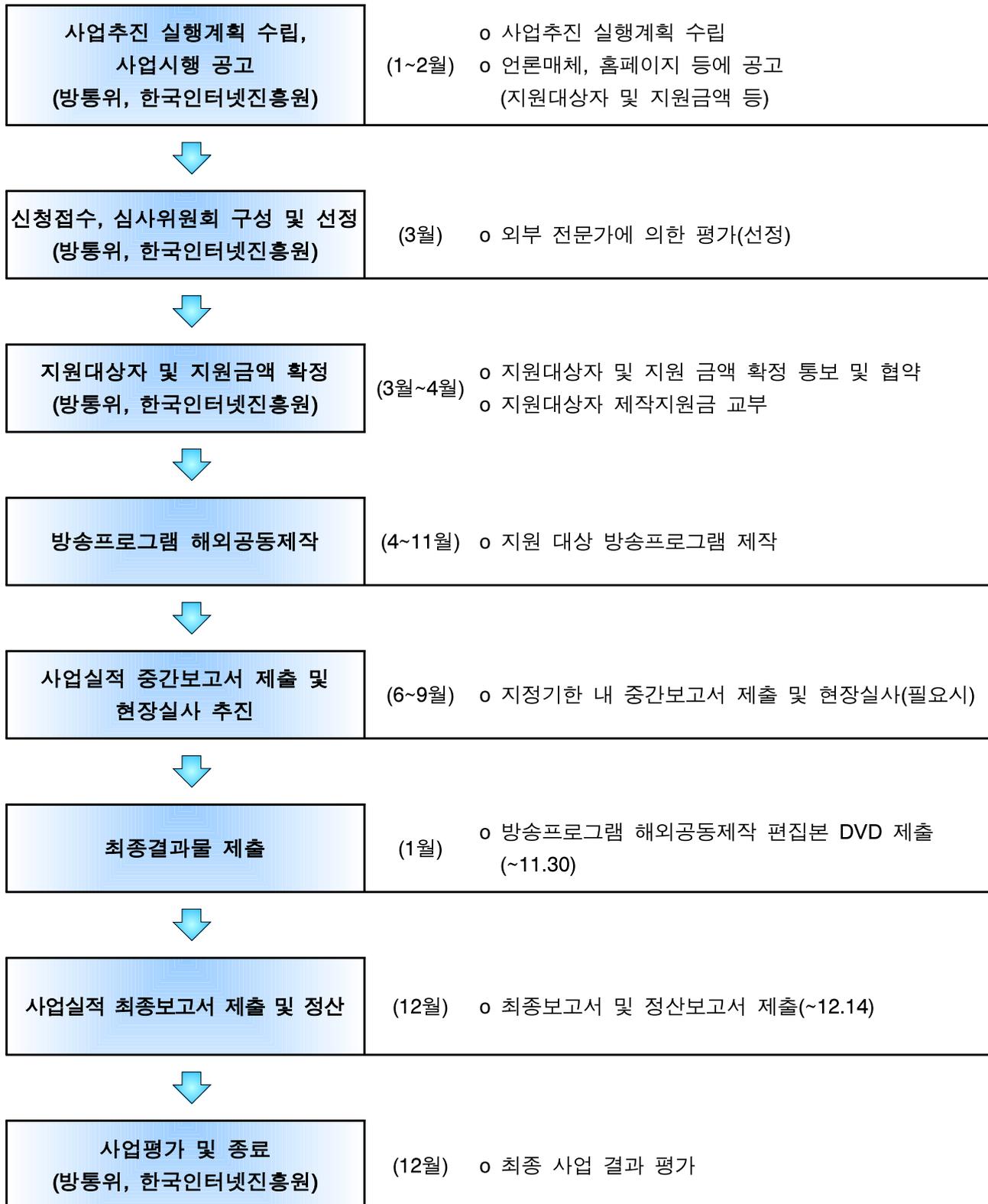
1. 사업목적

- 방송프로그램 국제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외 제작사간 공동제작 지원을 통해 우수 국내 방송콘텐츠 양성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 추진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체결국 방송국과 국내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
- 국내 방송 관련 산업(인력, 기술, 장비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

2. 공동제작의 의미 및 범위

- ‘공동제작물’ 이라는 용어는 뉴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방송용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제작물 등 기획물을 의미
- 공동제작 결과물의 수입·배급 및 전시에 대해서는 각 관련 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
- 공동제작 최소 기여율은 10%이며 공동제작 협약국간 협정에 의해 편차발생 (한-EFTA 공동제작 부속서의 경우 최소 20% 명시)
- 공동제작자 각각의 투자 비율과 실질적 기여에 비례하여 제작물 소유권, 수출에 따른 수익 배분 등 제작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

3. 공동제작 지원사업 추진절차



II 제작 지원 대상 및 내용

1. 공동제작 지원 신청 대상자

- 방송법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된 방송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기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사업자 또는 프로그램은 동 사업에 지원 불가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 '11년 지원대상 중 중도 포기한 주관사업자 및 '09년 이후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업자
 -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원 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동제작 지원내용

-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 및 한-싱가포르, 한-캄보디아 공동제작협정,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에 따른 해외 공동제작물에 대한 제작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과 「협찬 고지에관한규칙」 등 방송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 구성

3. 지원 규모

- 총 ○편 제작지원
 - 1편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사업자당 연간 4억원이내 지원
 - ※ 지원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 ※ 기존 작품을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미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이를 재구성한 프로그램 및 완성된 구매 프로그램 등) 및 타 정책자금 및 시설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제외

4. 공동제작 유형

- 공동제작 유형에는 “교환형”, “공동작업형”이 있으며 국내 제작 참여자가 단순 출자참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 불가
 - ※ “교환형(Swapping)”은 하나의 시리즈를 공동제작자가 한 편 또는 여러 편씩 나누어 제작한 후 교환하는 형태로 판권은 공동소유하는 형태의 공동제작
 - ※ “공동작업형(Co-operation)”은 공동제작자가 한 편의 영상제작물의 각본, 촬영, 편집 등을 공동으로 하는 형태의 공동제작

Ⅲ 제작지원 조건

1. 제작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2. 관련법령 및 규칙 등 준수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1), 「방송통신발전기금관리 및운용에관한규칙」 제14조2),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부과하는 사업수행지침 및 제작지원 조건 등을 준수
-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관한규정」 · 「협찬고지에관한규칙」 등 방송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

3. 공동제작 준수조건

- 공동제작협정국(EFTA 4개국, EU 27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 33개국과의 공동제작을 추진해야 하며 협정별 제작조건 준수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U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방송통신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 제14조(기금지원조건) 위원회는 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제3항의 통보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EFTA국가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각 공동제작자의 기여비율은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2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제작자는 각각의 투자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기술 및 창의적 기여를 하여야 함
- 제작물 및 재제작물 복사본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 원본 제작물에 대한 접근은 공동제작자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함

② 언어

- 각 공동제작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관련 당사국의 국어로 제작되어야 함. 하나 또는 여러 당사국의 언어로 제작되는 것은 가능하며, 대본상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언어로 된 대사가 포함될 수 있음
- 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당사국 국어로의 더빙 또는 자막 작업은 해당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되, 이와 다르게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EU 국가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우리나라 제작자(모두 합하여)와 EU 제작자(모두 합하여)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30% 이상(애니메이션 35%이상)이어야 함
 - ※ EU는 2개국 이상 참여(애니메이션은 3개국이상)하여야 하며, 1개국이 10%이상 투자해야 함
- 기술적 예술적 기여는 투자와 비교하여 20%이내(애니메이션은 10%이내)여야 하며, 총 기여의 70% 이내(애니메이션은 65% 이내)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대 20%까지 가능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이어야 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해야함

○ 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싱가포르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
 - ※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캄보디아, EU27개국) 및 싱가포르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싱가포르, 제3국에서 진행하되,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된 것이어야 함

④ 사운드 트랙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되어야 함
- 내레이션, 더빙,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
-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싱가포르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싱가포르-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
-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

○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10% 이상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캄보디아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
 - ※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EU27개국) 및 캄보디아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캄보디아, 제3국에서 진행하되,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된 것이어야 함

④ 사운드 트랙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되어야 함
- 내레이션, 더빙,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
-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캄보디아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캄보디아-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
-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

4. 프로그램 송출 및 제작지원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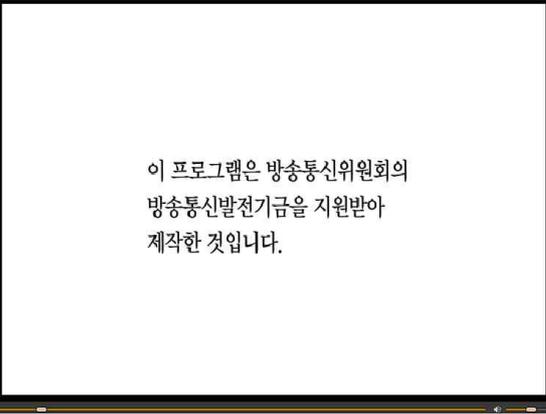
가. 방송 송출

-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제작완료후 2개월 이내 1회 이상 매체를 통하여 방영(송출)
 - 사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 또는 홍보 추진
 - ※ 상기 기한내 방송에 서비스(송출)하지 못할 경우 제작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방영 일정이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승인 필요

나. 제작지원 고지

- 아래 내용을 시청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하여 3초 이상 고지
 - 프로그램 시작 전 :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프로그램 종료 후 : 제작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제작지원 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예시 화면)

	
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 종료 후

5.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조건, 사업수행계획 등 위반 시 제재조치

-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지침,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 사업년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 불가
-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 불가
- 제작지원 결정 이후 제작을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 불가
※ 제작지원금 교부신청 이전 제작 중단 및 포기 사업자는 예외
-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 진행상황 및 제작비 집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 위반, 사업비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에는 사업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제작지원금의 반환, 일정기간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6. 기타 조건

- 지원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비영리적 사업(KTV, 국회방송, 재외동포방송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
- 지원 대상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후 완성본 또는 방송프로그램 소개 영상물을 방통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디지털 유료방송 콘텐츠 유통시스템(DDS: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System)에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공

- 3D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익적 사업(3DTV 실험방송 추진단 및 해외시연 등)에 제작결과물을 제공
- 지원대상 방송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음
- 방송사업자의 자체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는 총 제작비에 반영 불가
- 방송사업자의 제작책임자 및 기획연출자는 당해 방송사에 소속된 인원이어야 하며, 방송사간 공동제작의 경우도 주관방송사와 참여 방송사에 동일하게 적용
-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의 전과정을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며 제작 과정의 일부 외주는 허용

IV 신청절차 및 방법

1. 제출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3. 5(월) 17:00 까지
 - ※ 접수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자료

구분	서류명	형태	수량	비고
01	공동제작 지원신청서	원본	1	붙임 참조
		사본	7	
02	사업수행계획서	원본	1	
		사본	7	
03	사업자현황자료	원본	1	
		사본	7	
04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사본	8	-
05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8	1개월내 발급
06	사업자등록증	사본	8	1개월내 발급
07	2011년 재무제표 사본	원본	1	
		사본	7	
08	파일수록 CD	-	1	상기 전체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처 및 제안내용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실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12층
 - 신성우 책임연구원 (02-405-5295, ssw@kisa.or.kr)

2.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후에도 관련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제출서류는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A4용지 단면 출력하고 바인딩하여 제출
 - ※ 과제 책임자 명함 및 자료수록 CD 별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V

심사 및 평가

1. 구성 및 운영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부문	심사 방법 및 심사위원 구성	
	심사방법	심사위원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대면심사	0명

※ 방송 제작 전문가(전·현직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방송 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방송콘텐츠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 구성

○ 운영기간 : 심사평가 기간 내

※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함

2. 심사 및 평가방법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제작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제작능력, 제작비 적절성, 제작물 활용계획 등 심사 평가
- 제출 서류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

※ 지원사업자는 대면심사에 참석하여 기획의도 및 제작비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원칙

- 부문별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대상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 총점 및 평점산출

- 심사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인 프로그램은 지원제외
-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 대상 순위 선정 및 원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실시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제작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기획이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40
	교육적이고 공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시대적 현실 및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가?	
	다양한 문화권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가?	
제작능력	제작계획이 구체적이고 제작일정은 실현 가능한가?	30
	제작인력 구성 및 장비운용 등은 적절한가?	
	관련 제작실적 등 전문적인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제작비의 적절성	제작비의 산정내역 및 구성은 적절한가?	20
	해외기관의 현물, 현금 지원 등 참여비율은 적절한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등 제작사의 재정은 건전한가?	
공동제작물 활용계획	제작물 국내외 방영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10
총 점		100

※ 동점일 경우는 제작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제작능력, 제작비의 적절성, 공동 제작물 활용계획 순으로 선정

※ 상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동제작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제안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요청시 장소 및 일정 등은 서면으로 추후 별도 통보

VI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신청

1. 협약체결

-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작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단위별로 협약을 체결

2. 지원금 신청

가. 신청시기

- 지원대상자 결정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의 70%에 대하여 교부신청하고, 중간평가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잔금 30% 교부신청

나. 제출서류

- ① 지원금 신청 공문 1부
- ② 방송통신발전기금 교부신청서 원본 1부 : 【붙임 3】 참고
- ③ 반환지급보증증권,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각1부
※ 공공기관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 ④ 자체부담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자체부담금 전액 또는 승인된 금액 입금
- ⑤ 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제출 공문을 포함하여 직접 또는 e-mail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실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12층
 - 신성우 책임연구원 (02-405-5295, ssw@kisa.or.kr)

라. 참고사항

- 지원 제작비용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협약시 제출
 - 보험가입액 : 제작지원금 전액
 - 피보험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보험기간 : 제작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 보증내용 :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금 계약이행보증
 - 보험계약자 : 지원 대상 법인명

- 지원금 관리용 계좌 신규개설(※ 자체부담금, 지원금 계좌 별도 개설)
 - 당해 방송프로그램 지원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및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
 - 2개 이상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받는 경우, 방송프로그램별로 별도계좌 개설

3. 착수신고서 제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신고서(붙임 2) 제출

VII 총 제작비 집행 및 제작 지침

1. 제작비 집행기간

- 제작지원 사업자의 자체부담금 및 지원금에 대한 제작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협약일 ~ 2012.11.30)으로 한정
 - ※ 단, 제작기간 이후 최종 정산시기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지급, 회계감사비용, 정산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2012.12.10까지 인정)
 - ※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집행기간은 신용카드 사용일 기준이 아닌 사용금액 결제일 기준

2.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 자체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
 - ※ 1개 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2개 이상인 경우, 방송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통장 및 회계장부로 관리

3. 총 제작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 가. 총 제작비(자체부담금 + 지원금)는 당해연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제작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총 제작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

총 제작비 사용가능 항목	총 제작비 사용불가 항목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 외부 인건비(주관/공동제작업체 소속 이외 인력) ○ 출연료(연기자 배역료, 음성배역, 직업출연료, 일반출연료, 음악출연료, 무용료, 계약직원 출연수당, 가족 및 단체출연) <input type="checkbox"/> 직접비 ○ 기획료(자료조사비) ○ 원고료(극본료, 구성료, 번역료, 일반원고, 기타원고) ○ 음악료(작사료, 작곡료, 편곡료, 연주료, 계약직원 음악료, 효과료 등) ○ 미술비(미술재료 등) ○ 컨버팅비(영상·음성 변경 등) ○ 외부장비사용료(촬영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특수효과, 특수장비, 동시녹음장비, 중계장비, 운반비, 차량 임차용료 등) ○ 외부시설이용료(녹화·녹음시설, 편집시설 등) ○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 제작진행비(업무추진비 등) ○ 기타(통역료, 회계감사비, 이행보증보험료, 환차손,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송금수수료 등)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 자체인력(주관/공동제작업체)의 인건비·수당 ○ 퇴직급여(내·외부 인력) ○ 전문직 용역을 일용직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처리) <input type="checkbox"/> 직접비 ○ 자산 취득비(장비구입비, 장비수리비) ○ 자가시설 이용료 ○ 사무실 임차료 ○ 감가상각비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 ○ 전화요금 등 경상경비 ○ 홍보비 및 광고비 ○ 유흥업소에서의 사용금액 ○ 자체보유 저작권료 ○ 1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 기타 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국내외 워크샵, 컨퍼런스 참가비 등)

※ 제작비 비목별 집행 기준 및 원칙은 [붙임 4] 참조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제작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시 총 제작비 집행 잔액과 총 제작비 불인정 금액은 전액 반납(자체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제작비 우선 집행)

- 단, 총제작비 인정금액이 자체부담금 이하일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이자만 반납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제작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

- 단, 인건비와 직접비 간 예산변경 불가

라. 정산 시에는 총 제작비 집행 잔액과 총 제작비 중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잔액 반납

- 단, 총제작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의 합이 제작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제작지원금과 제작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만 반납

<정산 및 반납 방법 예시>

총 제작비(14억)		총 제작비 집행금액	총 제작비 집행 잔액(A)	제작비 불인정 금액(B)	총 제작비 인정금액	반납액 (A+B)
지원금	자체부담금					
10억(60%)	4억(40%)	14억	0원	0.3억	13.7억	0.3억
		13.5억	0.5억	0.3억	13.2억	0.8억
		9억	5억	0.3억	8.2억	5.3억

※ 집행 잔액은 전액 지원금으로 간주하여 반납

4.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현금 사용 증빙	현금 영수증	·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 자필서명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간이 영수증	· 3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함 · 총액 1백만원까지만 인정 (단일 건에 대해 3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 여러 개로 분할 처리하는 경우 불인정)	사용내역서
체크·신용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가능

- 가. 총 제작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프로그램별,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고 추후 주관기관 요구시 제출
-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제작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인정하는 제작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대
-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제작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의 실제 제작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제작비 집행금액으로 인정

5. 해외에서의 제작비의 사용원칙

- 가. 해외촬영 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비, 사례금 등은 국내에서 외환 송금을 원칙으로 함
 -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신용카드사에서 해당일 환율로 결제)
 - 현금 환전(매입, 매출)은 환전하는 일자의 환율적용(환차손 발생 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
- 나. 3만원 이상을 현금 지급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출장신청서,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인정

다. 가이드비, 통역비, 코디네이터비 등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신분증 사본, 용역 일수 및 단가, 용역제공내역 등을 첨부

라.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계획 금액을 초과한 제작비 소요계획은 불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요청

6. 외주용역의 경우 총 제작비 집행처리 기준

- 외주용역의 경우에도 위 총 제작비 집행지침과 동일하며, 외주용역의 경우 외주용역사의 인건비는 외부 인건비로 간주하여 집행 가능 (단, 제작책임자, 기획연출자는 외부인력 용역 불가)

7.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승인 사항 : 2012.10.31(수)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필요

- 제작비 비목 변경(자체부담금 및 총제작비 변경 불가)
 - 각 항목별로 30% 초과 변경시 변경승인요청

- 기타 사업수행 계획 및 제작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 ※ 필요 시 소명자료 제출 및 구두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나. 변경승인 요청 및 변경신고서 제출 방법

- 6하 원칙에 의한 서면제출
 - ※ 양식 **【붙임 10】** 참조

다. 변경신고 사항 :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으로 제출

○ 제작계획서의 주제 및 기획의도에 부합하고 작품의 완성도가 유지
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 필요시 소명자료 제출 및 구두설명 요구

VIII 중간 보고

1. 제출기한 : 2012년 6월 29일(금) 15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기한 미준수하는 경우, 최종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2.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 제출 공문 1부(원본)
- 중간보고서 1부(원본) : 【붙임 5】 참고
- 기타 중간결과물 수록 CD 1매

3.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제출공문을 포함하여 직접 제출
- 제출처 및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실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12층
 - 신성우 책임연구원 (02-405-5295, ssw@kisa.or.kr)

IX 결과 보고

1.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4일(금) 15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기한 미준수하는 경우, 최종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2.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원본)

○ 결과보고서 1부(원본) : 【붙임 6】 참고

※ 제작결과물 마스터테잎 보관 및 제공 관련 서약서

○ 기타자료

- DVD 및 Blu-Ray 등 제작물 수록 디스크 제출

※ 2012. 11. 30(금)까지 공동제작물 편집본 디스크 우선 제출

3.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제출공문을 포함하여 직접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 및 결과보고서 1부를 바인딩하여 제출

○ 제출처 및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실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12층

- 신성우 책임연구원 (02-405-5295, ssw@kisa.or.kr)

4. 기타참고사항

가.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원한 방송프로그램 및 결과보고서 등 제작지원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 가·감점 부여 또는 제작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거나 해당 제작사에 대하여 차기년도 동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

나. 2012~2013 국내외 방영실적 및 수익현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조 요망

5. 제출 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평가

- 계약자는 중간 결과 발표 또는 진행사항을 중간점검하기 위하여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제작 진행사항 등을 협의
-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동제작 중간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는 아주우수(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불량(60점미만)으로 구분
- 평가 결과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당해 지원 중단가능

※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동제작지원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함

X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1. 처리절차

- ① 수행업체는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협의
- ② 수행업체는 (가)정산보고서 작성후 정산보고서와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진흥원에서 위탁하는(또는 계약자 기관이 위탁하는)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제출양식
 - 지출 원인행위 근거서류,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자부담, 지원금)
 -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 ③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 수행업체에게 송부
- ④ 수행업체는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주관 기관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 바인딩하여 1부 제출
- ⑤ 수행업체는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금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전송
-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산결과 검토(필요시 실사) 후 오류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

2.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제출내용 : 정산잔액 송금(제작사) 및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사: Excel 파일 전송포함)
- 제출기한 : '12년 12월 13일(목)까지 제출
 - ※ 제출기한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도착 기준이며, 우편물은 당일 18:00 까지 도착 기준

3.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제작비(제작지원금 + 자체부담금) 집행잔액, 제작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총 제작비 불인정 금액
 - 단, 총제작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금액의 합이 제작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제작지원금과 제작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4. 정산보고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제출공문이 포함된 정산보고서 1부를 방문 제출
 - ※ 제출형식 : 3공 바인딩으로 제출
 - ※ 공문, 정산내역서,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은 제출 전 E-mail 송부를 통하여 사전검토 요망
- 제출처 및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실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12층
 - 신성우 책임연구원 (02-405-5295, ssw@kisa.or.kr)

5.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바인딩
 - ① 정산보고서 1부 : 【붙임 7】 참고
 - ② 제작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1부(개설은행 발급)
 - ③ 제작지원금 계좌 해지 후 통장사본(전체 페이지 복사)
 - ④ 회계감사보고서 : 【붙임 8】 참조
 - ⑤ 정산내역서 : 【붙임 9】 양식의 엑셀출력물
 - ⑥ 지출원인 근거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회계감사시 제출된 서류 일체 사본

- 엑셀자료가 수록된 파일 e-mail 전송(위 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 제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성우 ssw@kisa.or.kr
 - 파일제목 : 송금 의뢰인명과 동일하게 작성

6. 정산잔액 송금방법

- 송금계좌
 -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지원 : 별도 고지
 - 예금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 송금 의뢰인명 표시방법(송금내역서의 송금의뢰인과 일치)
 - 업체명 잔금, 업체명 이자 구분하여 송금
 - 예1) "(주)○○○ 잔금"의 경우 : (주)○○○ 잔금
 - 예2) "(주)○○○ 이자"의 경우 : (주)○○○ 이자

-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또는 입금증) 스캔하여 e-mail 송부
 - 송금내역서 발송처 : ssw@kisa.or.kr
 - ※ 다수 프로그램 제작 시 반드시 프로그램별로 구분 송금 및 내역서 송부
 - ※ 정산 등의 모든 행정 처리는 주관사업자가 담당

- 최종 정산잔액 송금내역서 송부 : [붙임 11] 참조
 - ※ 정산보고서와는 별도로 송부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제안서

■ 프로그램명 :

○ 상대국/방송사/제작사 :

사업제안법인명 :

담 당 자	소속 및 직함	
	성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수행계획서

(총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1. 공동제작 프로그램 개요

가. 제목

나. 기획의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지원 지정공모과제 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

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 (10줄 이내로 작성, 세부내용은 별첨)

라. 프로그램 구성 (10줄 이내로 작성, 세부내용은 별첨)

마. 소재 및 주제의 특징

바. 제작규격(분량, 영상, 음향)

2. 해외공동제작 지원 필요성

※ 공동제작계획의 적합성 및 독창성, 공동제작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서술

3. 공동제작 프로젝트 내용

가. 해외공동제작 사업자

※ 사업자명, 소재지, 회사 소개, 해외공동제작실적 등 포함

나. 해외공동제작 사업자 선정사유

다. 공동제작 프로젝트 개요

라.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의 주요 내용

4. 공동제작협정 준수 계획

※ 공동제작협정 주요 준수 조건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별로 준수계획을 기술

가. EFTA 4개국과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② 언어

나. 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 ② 제작 참여 인력
- ③ 제작
- ④ 촬영 장소
- ⑤ 사운드 트랙
- ⑥ 공동제작 명시

다.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 ② 제작 참여 인력
- ③ 제작
- ④ 촬영 장소
- ⑤ 사운드 트랙
- ⑥ 공동제작 명시

라. EU 27개국과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② 제작 참여 인력

5. 제작일정

※ 지원대상 선정후 지원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추진일정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제작과정	기간	세부내용

6. 제작지원금 신청 내역

구 분		세부산출내역	금액(천원) (부가세 제외)
비목	세목		
총계			
■ 인건비	(합계) 1. 외부인건비 2. 출연료		
■ 직접비	(합계) 3. 기획료 4. 원고료 5. 음악료 6. 미술비 7. 저작권료 8. 외부장비이용료 9. 외부시설이용료 10. 여비 11. 제작진행비 12. 기타		

※ [붙임 1] 예산사용 지침 참조

※ '제작지원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미준수 시 심사 감점처리 및 향후 적발 시 반환처리 예정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추진 예산에 반영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작비 내역을 기재

※ 세부산출내역에는 단가,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삭제

7. 자체보유자원 활용계획

※ 지원대상 선정 후 계획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가. 인력 활용계획

자체인력			외부인력		
역무	인원수	비고	역무	인원수	비고

나. 장비 및 시설 활용계획

자체장비 및 시설		임차장비 및 시설		
장비·시설	수량	장비·시설	수량	소요비용

8. 기획자 및 연출자 경력사항

	기획자	연출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주요 제작경력		
수상경력		
기타		

9. 지원대상 프로그램 편성계획

구분	방송국명	방송채널	편성일시
우리나라			년 월 일 : ~ :
상대국			년 월 일 : ~ :

10. 기타 동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참고자료

사업자 현황 자료

법인명		대표자 성명	
허가(승인, 등록) 일자		운용 개시일	
채널명		공급분야	

1. 인력 현황(신청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2년	비고
임직원 수		
제작인력 수		

2. 자산 규모(2011년 결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비고
총자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최근 1회계연도의 사업자 결산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

3. 제작 현황

가. 편성현황(2011년)

구 분	연간 편성시간	편성비율
자체제작		
외주제작		
합 계		

나. 제작현황(2011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율
자체제작비		
외주제작비		
합 계		

4. 해외공동제작 및 방송 실적(2009~2011년)

연도	프로그램명	공동제작 상대국 및 방송사(제작사)	제작규격	국내·외 방송 및 판매실적	총 제작비
			회× 분물		천원

※ 최근 3년간 해외공동제작 및 유사 과제 수행 경험에 대한 사항 기재 및 증빙첨부

5. 제작지원 관련 타 정책자금 수혜현황(2009년~)

정책자금명	주관기관	사업 명 (지원프로그램 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비고

※ 방송발전기금, 국고, 문화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항을 전부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완료', '수행 중', '수행 예정', '신청 중' 등을 명확히 기재

착 수 신 고 서

프로그램 명		
제작기간	계약일 ~ 2012. .	
제작사 (계약자)	제작사명	
	주소	
	계약담당자	○ ○ ○ (부 서) (전화) (e-mail) (휴대전화)
제작책임자	소 속 : 주 소 : 연락처(전화, e-mail) : ,	
<p>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공동제작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착수신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top: 40px;">2012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10px;">제작책임자 : (인)</p> <p style="margin-top: 10px;">제 작 사 : (직인)</p> <p style="margin-top: 40px; font-size: 1.2em;">방송통신위원회 귀하</p>		

○ ○ ○ 프로그램 공동제작

1. 공동제작 목표

가.

○

○

나.

○

○

2. 공동제작 내용

가.

○

○

나.

○

○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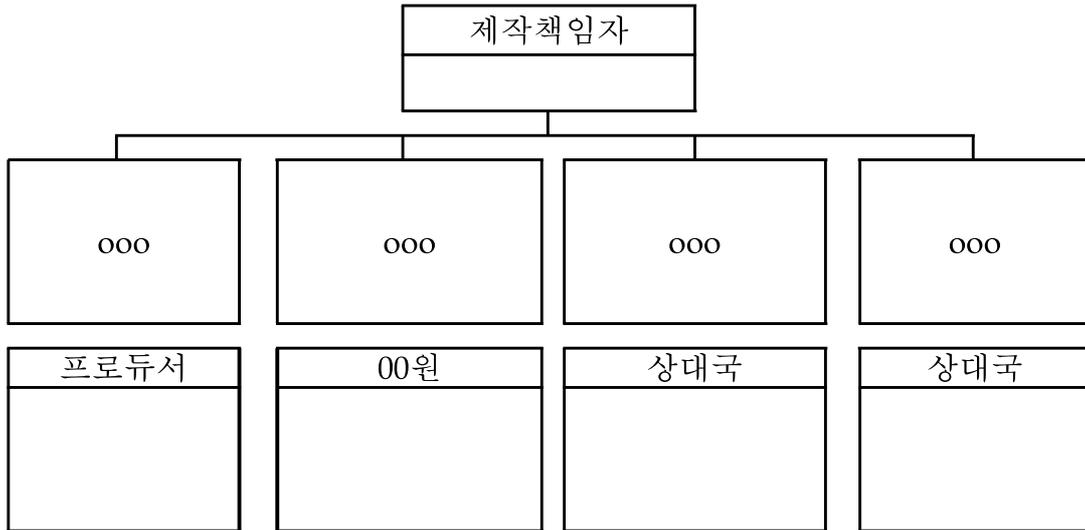
○

3. 추진계획

세부내용	제작자	월별 추진계획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분기별 수행진도(%)															

4. 공동제작팀 편성

가. 공동제작팀 편성표



나. 팀원별 참여율

소 속	직 책	성명	주요경력	참여율(%)	제작참여내용	비고
	책임자					
	프로듀서					
상대국	책임자					
	프로듀서					

주) 본 공동제작 참여율과 산출내역서의 참여율이 일치하여야 함.

다. 국내 공동제작팀 인적사항

1) 제작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				
현 주 소	(전화)				
학 력	교육기관명	부 터	까 지	전공분야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관련분야 제작실적(최근 3년간)					
프로그램명		제작기간	제작지원기관	상대국/방송사	

2) 프로듀서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				
현 주 소	(전화)				
학 력	교육기관명	부 터	까 지	전공분야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관련분야 제작실적(최근 3년간)					
프로그램명		제작기간	제작지원기관	상대국/방송사	

※ 프로듀서급 이상은 모두 작성

5. 주요 기자재 및 시설

시설·장비명	규 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확보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공동제작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내역을 기록하고 “확보방안”란에는 지원금을 제외한 유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신규구매로 구분하여 기록.

6. 공동제작 총 제작비 산출내역서

비목구분	금 액(천원)	구성비(%)	비 고
1. 공동제작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라.			
2. 경 비			
가. 국내여비			
나. 국외여비			
다.			
라.			
마.			
바.			
3. 일반관리비			
계			

※ 비고에는 지원금, 자체조달금, 상대국 부담 등으로 구분

[붙임 3]

201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신청법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기금교부 신청액 (단위:원)	제작지원금액	*xxx,xxx,xxx원(x억x천x백만원)(부가세 제외)		
교부신청 대상사업	사업명	방송통신협력협정 이행		
	프로그램명			
	사업기간	2012.11.30(금) 이내		
	총사업비 (부가세 제외)	구분	금액	비율
		방송통신발전기금	원	
		자체부담금	원	
기타자금		원		
	합계	원	100.0%	
교부금 수령계좌	거래은행	(지점명 :)		
	계좌번호			
	계좌실명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예금주			
<p>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영하는 201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방송통신발전기금 교부를 신청하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사업수행지침 등 부가조건을 수락합니다.</p> <p>붙임 :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1부 2. 지원금 관리통장(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작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수행기관의장(법인대표)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귀하</p>				

제작비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가. 외부인건비

구 분	내 용	집행방법
비목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사와 공동제작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나, 본 과제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ex, 조명감독, 촬영감독, 코디네이터 등) 	
집행 및 증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내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금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집행하되,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인정 ○ 개인별 실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참여율 및 지급내역과 함께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로 증빙 ○ 참여인력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에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속기관장 또는 내부전결권자가 확인한 변경서류로 증빙하고, 변경 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정산시 인정 - 단, 최초 인건비 예산 금액 초과 변경 불가 ○ 참여기관이 대학인 경우,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보수는 다음의 단가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집행 - 박사과정 월 200만원(100%참여시), 석사과정 월 150만원(100%참여시), 학사과정 월 80만원(100%참여시) 	
불인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 내부변경문서(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율, 참여기간 등)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였거나, 변경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해당과제에 대한 개인별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참여인력 이외의 지원인력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를 지급한 경우 ○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최초 편성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생 활용은 외부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음 ○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급후 개인도장(서명)으로 증빙한 경우 	계좌이체
참고사항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율은 인건비 배분율로서 타 과제 참여율을 합산할 경우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참여인력에 대한 월별 참여율을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관리기관 자료제출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외의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집행할 수 없음 ○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예: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등)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해당 인력이 원소속기관장의 파견명령(파견명령서 구비요망)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을 인정 ○ 인건비의 경우 예산 증액 불가 	

2. 직접비

가. 기획료, 원고료, 음악료 및 미술료

구 분	내 용	집행방법
비목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비, 포맷 제작 등 기획 관련 전문가 자문비 등은 기획료로 산정하고, 원고료, 음악료, 미술비는 하단의 내역들을 인정함 - 원고료 : 극본료, 구성료, 번역료, 일반원고료, 기타원고료 - 음악료 : 작사료, 작곡료, 편곡료, 연주료, 외부전문가 음악료(수당), 효과료 등 - 미술비 : 미술재료비, 미술 용역비 등 	계좌이체
집행 및 증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을 불문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집행액은 실비정산 ○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해야함 	
참고사항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중 총 누계액 50만원 이상 개인에게 집행 시 계약 체결 후 집행 해야 함 ※ 계약은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에 업무내용, 단가, 총액 반드시 기재 ○ 계약 미체결 시 협약기간 중 총 누계액 50만원 미만까지 계약서 없이 개인에게 집행 가능 ○ 기획료, 원고료, 음악료, 미술비에 대하여 자체 인력 활용 시 집행 금액 불인정 	

나. 외부장비사용료 및 외부시설이용료

구 분	내 용	집행방법
비목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장비사용료, 외부시설이용료는 순수 임차 비용 	계좌이체
집행 및 증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장비 예 : 촬영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특수효과, 특수장비, 동시녹음장비, 중계장비, 운반비, 차량 임차용료 등 ○ 외부시설 예 : 녹화, 녹음시설, 편집시설 등 ○ 금액을 불문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참고사항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시설 이용료 및 사무실 임차료 불인정 ○ 콘텐츠 제작과 관련되지 않은 임차료는 불인정 	

다. 여비

구 분	내 용	집행방법
비목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기관(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집행 및 증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는 사전에 출장명령 품의를 득한 후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별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함. 출장명령 품의서(출장신청서)에는 출장일시, 출장지(출발지-도착지),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일정별 세부활동내역, 여비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해당기관의 여비지급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출장신청서, 여비지급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내부 규정, 교통 영수증(출장확인 차원임) ○ 해당기관의 여비지급에 대한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여비실 집행액에 대한 모든 영수증(항공권, 기차표, 숙박권, 식비영수증 등 집행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 첨부)으로 증빙 KISA 규정 준수 ○ 시내출장의 경우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지급금액 및 연구책임자 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로 집행 ○ 국외출장시 추가적으로 증빙해야할 내역 : 여권 및 비자사본(출장자의 입출국일 확인용), 항공권, 출장자의 세부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팝플렛, 발표문 등 세부활동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문서 추가) 	
불인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샵 및 컨퍼런스 참석 등 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없이 사용된 경우 ○ 출장품의서 없이 영수증만으로 증빙한 경우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목적으로 여비를 집행한 경우 - 예)타기관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장가는 경우 등 ○ 행사 참가시 개최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 등을 제공함에도 여비에 숙박비 및 식비를 계상하여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 ○ 비참여인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 해당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지에서 발생한 택시비, 전화카드구입비, 객실료이외 서비스이용료(전화, 음료 등) 등을 추가로 집행한 경우 ○ 당초 계획된 출장계획의 변경으로 출장기간이 축소된 경우 출장복명을 통해 여비를 환수하지 않은 경우 ○ 자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주유비 인정 불가능(회사 경비로 처리) 	
참고사항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비, 주차료, 차량임차비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사업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된 경우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시 제한적으로 인정 	

라. 제작진행비

구 분	내 용	집행방법
비목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당해연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집행 및 증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관서업무비 등이 해당(※ 일반음식점 집행만 인정) ○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참고사항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흥업소 및 일반주점·주점 사용내역 불인정 ○ 전화요금 등 경상경비 불인정 	

마. 기타

구 분	내 용	집행방법
비목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료, 회계감사비, 이행보증보험료, 환차손,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송금 수수료 등 ○ 본 사업과 관련된 정산/결과보고서 인쇄비, TAPE 구매비, 택배비 등 	계좌이체 혹은 카드사용
집행 및 증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서에 기 반영된 내역만 인정됨 - 추후 반영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수행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액을 불문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참고사항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와 다름 ※ 기타사업비의 간접비처럼 집행해서는 안됨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 지원대상 프로그램 명

0

사업수행법인명 :

담 당 자	소속 및 직함	
	성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I. 사업개요

사업수행 법인명						
프로그램명						
공동제작 상대국 및 방송사(제작사)						
제작기간	2012. . . ~ . . .					
총 제작비 (부가세 제외)	구 분	우리측 자금			상대측 자금	총 제작비 (①+②)
		제작지원 금 (a)	자체조달자금 (b)	소계(①) ①=a+b	제작비(②)	
	금액(원)					
	비율(%)					100.0
프로그램 개요						
우리측 제작비 집행액 (부가세 제외) * . . . 기준	구분	제작지원금	자체조달금	계		
	집행액(원)					
	집행률(%)					
추진실적	○ ○ ○ ○					
추진계획	○ ○ ○ ○					
편성계획	○ (※채널 및 편성 일시)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제 작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년 ○월		○년 ○월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작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 기재

III. 기타특이사항 및 보고사항

관리번호
2012- -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 사업비 : 원(집행결과 기준)
 o 지원금 : 원
 o 기타 : 원
 ◎ 프로그램명 :

제출일자 : 2012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명 :

직 인

담 당 자	소속 및 직함	
	성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I. 사업개요

사업수행 법인명							
프로그램명							
공동제작 상대국 및 방송사(제작사)							
사업기간	2012. ~						
총 제작비 집행내역 (부가세 제외)	구 분		우리측 자금			상대측 자금	총 제작비 (①+②)
			제작지원 금 (a)	자체조달자금 (b)	소계(①) ①=a+b	제작비(②)	
	계 획	금액(원)					
		비율(%)					100.0
	집 행 액	금액(원)					
		비율(%)					100.0
■ 지원금 집행잔액 : ■ 지원금 발생이자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개요를 요약하여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첨부)						
사업 추진방법	(※ 프로그램 제작방법, 일정 등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프로그램 송출실적	우리측	○ 방송사 및 방송채널 : ○ 송출 (예정)일시 :					
	상대측	○ 방송사 및 방송채널 : ○ 송출 (예정)일시 :					
제작결과물 제출내역	○ 제작결과물 : 제작물 사본을 DVD(HD프로그램) 또는 CD로 2부 제출(※ 편성확인공문 별도 첨부)						

II. 해외공동제작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2. 프로그램 구성

3. 제작규격(분량, 영상, 음향)

4. 공동제작 상대국 및 방송사(제작사)

5. 공동제작협정 준수 내용

※ 공동제작협정 주요 준수 조건(공고-I.사업개요)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별로 준수 내용을 기술

가. EFTA 4개국과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② 언어

나. 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 ② 제작 참여 인력
- ③ 제작
- ④ 촬영 장소
- ⑤ 사운드 트랙
- ⑥ 공동제작 명시

다.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 ② 제작 참여 인력
- ③ 제작
- ④ 촬영 장소
- ⑤ 사운드 트랙
- ⑥ 공동제작 명시

라. EU 27개국과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② 제작 참여 인력

Ⅲ.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제 작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년 ○월		○년 ○월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작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 기재

IV.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V. 자체평가

○ 사업수행 결과 잘한(된) 점

○ 사업수행 결과 잘못된(된) 점

○ 사업수행 중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사업수행이 참여방송사에 도움이 된 점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자 만족도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① 사업목적, 지원조건, 지원대상, 예산의 규모 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

② 사업에 대한 홍보,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신속·간편 등 절차에 대한 만족도()

③ 제작사의 경쟁력 및 기여도 등 지원효과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VI.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VII.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DVD 또는 CD	-----		
2	보 고 서	-----		
3	책 자	-----		
4	뉴스레터			
5	편성표			
.	.			
.	.			
.	.			

< 자료유형 >

- DVD 또는 CD
- 보 고 서
- 발간책자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편성표 또는 편성확인서, 언론보도 자료 등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본 페이지를 표지로 사용)

◎ 프로그램명 :

◎ 정산내역(금액단위 : 원)

계획(최종 변경후)			집행			총제작비 집행잔액(a)	총제작비 불인정액(b)	지원금 발생이자 (c)	지원금 해지이자 (d)	송금총액 (a+b+c+d)
지원금	자부담	총제작비	지원금	부담금	총제작비	집행잔액이(-) 일 경우"0" 표기	잘못 집행한 제작비			

◎ 붙임 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산보고서 뒤에 양면인쇄하여 제본

- ①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거래내역 확인서(개설은행 발급)
- ② 지원금 계좌 해지 후 통장사본(전체 페이지 복사)
- ③ 회계감사보고서 : 【붙임 8】 참조
- ④ 정산내역서 : 【붙임 9】 참조(엑셀 양식 제공)
- ⑤ 기타 부속서류 일체(지출을 증빙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 사본)

제출일자 : 2012년 월 일

사업수행사업자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회계감사보고서

총 제작비(자체부담금 포함) 집행실적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2012년 ○○월 ○○일

본 감사인은 ○○○사의 2012년 ○○월 ○○일(프로그램 제작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의 ○○○(프로그램명)에 대한 총 제작비 집행 내역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집행 내역서를 작성할 책임은 ○○○사에게 있으며, 본감사인의 책임은 이 집행 내역서가 ○○○사가 제출한 사용계획서 및 지출증빙 및 기타 관련서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총 제작비 집행지침에 따라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프로그램 명) 정산보고서 및 부속서류 일체를 확인결과 총 제작비 ○○○원 중 ○○○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총 제작비 집행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지침을 위반한 금액은 총 ○○○원임을 확인합니다.

○○ 회계법인

담당공인회계사 ○○○ (인)

(전화번호:)

붙임 1. ○○○(프로그램 명) 총 제작비 정산내역서 1부

2. 부속서류 일체(지원금·자체부담금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사본, 계약서 등)

※ 본 감사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한함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정산내역서

I.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 이자	반납 총액	송금 총액
제작 지원금	자체 부담금	계	제작 지원금	자체 부담금	계	제작 지원금	자체 부담금	계				

II. 총 제작비 집행총괄표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분	비목	계획 (a)	집행			집행잔액 (a-e)	집행율 (%)	잔액발생 사유
			제작 지원금 (b)	자체 부담금 (c)	계 (e=b+c)			
총계								
1. 인건비	(합계)							
	1-1. 외부인건비							
	1-2. 출연료							
2. 직접비	(합계)							
	2-1. 기획료							
	2-2. 원고료							
	2-3. 음악료							
	2-4. 미술비							
	2-5. 저작권료							
	2-6.외부장비이용료							
	2-7.외부시설이용료							
	2-8. 여비							
	2-9. 제작진행비							
	2-10. 기타							

※ 계획(a)은 최초 사업계획 기준으로 작성(별도 비목 작성 또는 임의변경 불가)

※ 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발생 사유가 많을 경우 별도자료로 제출요망)

4. 지원금 이자발생 내역

○ 총 발생이자 : 원

5. 총 제작비 비목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없으면 변경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 분		당초예산	최종 변경예산	변경을	변경사유	승인/신고 여부
-	비목					
총계			좌동	-	변경불가	-
1. 인건비	(합계)					
	1-1. 외부인건비					
	1-2. 출연료					
2. 직접비	(합계)					
	2-1. 기획료					
	2-2. 원고료					
	2-3. 음악료					
	2-4. 미술비					
	2-5. 저작권료					
	2-6.외부장비이용료					
	2-7.외부시설이용료					
	2-8. 여비					
	2-9. 제작진행비					
	2-10. 기타					

※ 승인여부 : 00일 승인 필 / 00일 신고 필(관련 문서번호 기재)

6.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 내역

(1) 불인정 금액 합계 : 원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계좌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출 일자	불인정 사유
		비목	내역	지출액			
합계							

(3) 자체부담금(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계좌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출 일자	불인정 사유
		비목	내역	지출액			
합계							

(4) 기타 수익금 집행내역(최초 계획한 총 제작비에 포함 될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계좌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출 일자	불인정 사유
		비목	내역	지출액			
합계							

[붙임 10]

제작비 변경 승인/신고 요청서

구 분		변경전(A) (원)	변경후(B) (원)	변경금액(C) (B-A)원	변경비율 (C/A)%	변경사유
-	비목					
1. 인건비	1-1. 외부인건비					세부내역 별지 사용 가능
	1-2. 출연료					
2. 직접비	2-1. 기획료					
	2-2. 원고료					
	2-3. 음악료					
	2-4. 미술비					
	2-5. 저작권료					
	2-6.외부장비이용료					
	2-7.외부시설이용료					
	2-8. 여비					
	2-9. 제작진행비					
	2-10. 기타					
합계		총 제작비	좌동	절대값의 합	절대값의 합/A%	

※ 직접비 항목은 사업자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통해 변경가능

※ 6하 원칙에 의한 서면제출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집행잔액 송금내역서

2012년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지원 사업 집행잔액 송금내역서

※ 송금액이 없어도 본 내역서 작성 및 송부, 집행기간 연기 승인기관은 “OO까지 연기승인”으로 표기

- 송금의뢰인 : ※ 실제 송금의뢰인 명칭과 동일
- 제작 프로그램 명 :
- 금회 송금액 : ※ 원 단위까지 송금(아래표의 송금액과 일치)

단위 : 원

계획(최종 변경후)			집행			총제작비 집행잔액(a)	총제작비 불인정액(b)	지원금 발생이자 (c)	지원금 해지이자 (d)	금회 송금액 (a+b+c+d)
지원금	자부담	총제작비	지원금	부담금	총제작비					
						집행잔액이(-) 일 경우“0” 표기	잘못 집행한 제작비			

※ 송금 영수증(또는 입금증) 반드시 첨부

- 송금일자 : 2012. 12. .

프로그램 제작사명 : (직인)

※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1005-701-613066 (우리은행 가락본동지점)

- 예금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붙임 1-1]

I. 제작지원금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교 부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지원금이자 발생액 : 원

- XX은행 XX 지점, 예금주 방통위 또는 대행사업자, 계좌번호 : XXXX-XX-XXXX(추후 통보)

제작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결과보고 시 계좌를 해지한 후, 방통위 또는 대행사업자 계좌로 입금(송금내역 및 해지통장 사본 제출)

II. 제작지원금 집행총괄표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 분		계 획 (a)	집 행 (b)	집 행 잔 액 (a-e)
비 목	세 목			
총 계				
■ 인건비	(합계)			
	1. 외부인건비			
	2. 출연료			
■ 직접비	(합계)			
	3. 기획료			
	4. 원고료			
	5. 음악료			
	6. 미술비			
	7. 저작권료			
	8. 외부장비이용료			
	9. 외부시설이용료			
	10. 여비			
	11. 제작진행비			
	12. 기타			

※ 계획(a)은 최초 사업계획 기준으로 작성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작비 내역을 기재

○ 기타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기타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계좌인출 일	인출액	지출 내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자
		비목(세목) 및 내역	지출액		
합계					

IV. 제작지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구 분		계획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비목	세목				
■ 인건비	00				
	00				
	00				
■ 직접비	00				
	00				
	00				
■ 이자발생액		-	-		※ 지원금계좌 이자수익 전액반납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V. 제작지원금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구분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비목				
■ 인건비	00				
	00				
	00				
	00				
	00				
■ 직접비	00				
	00				
	00				
	00				
	00				

※ 승인여부 : 방통위 또는 대행사업자,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별첨 양식5]

지원비 사용내역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공동제작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라. 2. 경 비 가. 국내여비 나. 국외여비 다. 라. 마. 바. 3. 일반관리비 4. 불용액 등			
계			

※ 결과보고서의 제작 지원금 집행내역을 사용 용도별 내역을 기록